

소 도체 등급제 실시

1) 축산물 유통개선

① 축산물 공판장 건설

축산물 도매시장의 확대설치로 지방도시의 원활한 육류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도모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의한 생산자및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도단위 도매시장(공판장) 1개소를 설치하며 선진기술도입과 시설의 현대화로 도매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축협중앙회 직영으로 운영내실화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공판장은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시설 규모를 보면 부지 3,000평에 내외건물

구 분	소	돼지	비 고
○작업장	100두	210	○도축물량의 30% 수준
○포장·부분육 가공	30	700	
○지육 경매장	100	700	
○반류장	100	700	
○냉동·냉장실	100	700	
			○발수처리 시설300m ²

※ 농안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울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900평이며 처리능력은 다음표와 같다.

② 소, 돼지 도체등급제 실시

경제성있는 육류의 공급으로 국민영양수준을 향상시키며 육류의 공정거래 가격형성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양축가의 생산성제고로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등급제 실시의 필요성을 보면 객관적인 등급기준(규격과 품질)의 설정으로 공정거래 촉진에 의한 유통개선과 대도시의 원활한 육류의 공급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축산물의 생산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한다.

실시시기는 금년하반기 이후에 실시하며 예상지역은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축산물 도매시장 8개소와 축산물 공판장1개소에서 실시한다.

등급기준(안)은 다음표와 같으며 등급검사대상 도체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위하여 수탁되는 도체와 도매에서 판매를 위하여 처리되는 도체이며 등급검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등급기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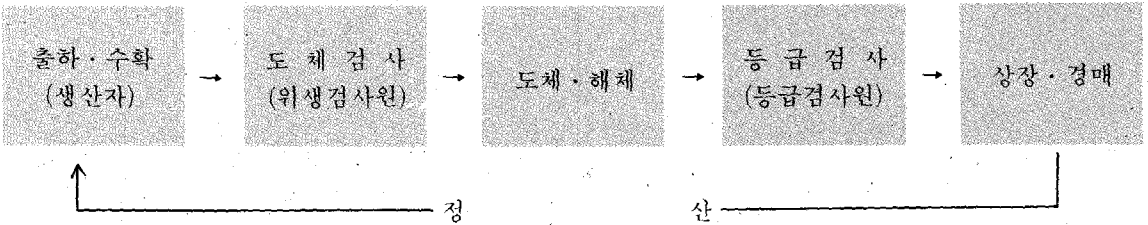
구 분	등급종류	평 가	요 인
		산 육 성	육 질
소 도체	6등급내외	도체중, 가제정육율, 등지방두께, 도체장비	상상숙, 착육도, 품종, 지방부, 부착도, 육색, 지방색, 성별등
돼지도체 또는지수제	5등급내외	도체중, 도체율, 등지방 두께	착육도, 육색, 지도부착도, 지방색, 성별, 외형, 끝냈질 등

12주동안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관요원의 해외 파견연구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를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2억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했다.

2) 축산진흥대회

우량가축을 선발 시상 및 일부는 종축으로 활용하

● 등급검사과정 (도매시장)



농림수산부는 등급검사업무의 공정성유지를 위하여 등급검사원을 양성 1개소당 2.5명씩 30여명을 양성, 배치할 예정이다.

등급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축산시험장에서



여 가축자질 개량을 촉진하며 양축농가의 애축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축산물 수요에 대비한 적정사육규모의 가축사육유도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개최한다.

지방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전국대회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지방대회는 도지사가 매년 9~10월중 실시하며 단위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는 계획수립 및 행사완료 후 5일 이내에 보고한다. ■